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4

제출년월일 : 1993. 1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○ 도시계획법 시행령(1992. 7. 1. 대통령령 제13684호)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조항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
○ '91. 7. 19 충청북도직제규칙개정(제1779호)으로 조례개정

□ 주요골자

○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중 "위원장,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"를 "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" 개정
○ 위원중 공무원의 인원수 제한 및 임명, 위촉자를 "부지사"에서 "도지사"로 개정
○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조항 신설
○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조항 신설
○ 위원회 기능중 "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"를 "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"로 개정
○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명기하도록 개정

□ 근거법령 :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2
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의 2 내지 제65조

□ 첨 부

1.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2. 신구조문대비표 1부
3. 관계법규 발췌 1부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제1항중 "두고 위원은 20인이내로" 를 " 포함한 22인이내의 위원으로" 로 한다

제2조제3항중 "부지사" 를 "도지사" 로 "위촉한다" 를 "위촉하되" 로 하고 "도 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한다" 를 추가한다.

제2조제4항중 "공무원이아닌" 을 "도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" 으로 한다

제2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있다.

②소 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소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조의3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도시계획상임기획단)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, 지도 및 조사,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수있다.

제4조제2항중 "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" 를 "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" 로 한다

제7조제2항중 "도시과장"을 "도시계획과장"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(생략)	제1조(목적)(현행과 같음)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이내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..... ..... 포함한22인 이내의 위원으로 .....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③위원은 도의 관계 실, 국, 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,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부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..... ....도지사..... 하되, 도 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 으로 한다.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	④도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.... ....
제2조의2(신설)	제2조의2(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수있다. 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

현 행	개 정 안
	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조의3(신설)	제2조의3(도시계획상임기획단)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와 도지사가 위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, 지도및 조사,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수 있다.
제4조(기능) ①(생략) ②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(생략)	제4조(기능) ①(현행과 같음) ②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되지 않은 업무..... ③(현행과 같음)
제7조(간사및서기) ①(생략) ②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	제7조(간사및서기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도시계획과장.....